

# [등촌 두산위브 주상복합 아파트(서울)] 입주자모집공고(案)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07.26. 입니다.(무주택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가능 시간(아파트투유 www.ap2you.com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청약 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신택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 세립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가 체결한 신탁계약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8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서울특별시 강서구청시 제2018-35호)를 받아 공급되는 것입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아파트입니다.
  - 과밀억제권역 : 서울시·인천(일부)·경기도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일부)·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 투기지역 :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동대문구, 동작구, 종로구, 중구, 세종시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광명시·하남시·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
  - 청약과열지역 : 서울시·경기도 과천시·성남시·광명시·구리시·안양시 동안구 / 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화성시(동탄2)·광교택지 개발지구 내 - 공공택지·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수원시 팔달구·용인시 수지구·기흥구 / 부산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9조, 제25조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019.07.26)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1년 이상(2018.07.26.). 이전부터 계속 거주, 외국거주기간 제외) 거주한 신청자가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2에 따라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요건(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되어 제23조 제2항 제7호에 의해 제4조 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 당첨·계약시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로 청약 신청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85㎡ 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 주택청 전용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로 선정하며, 전용85㎡ 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단, 본 주택은 공급세대가 85㎡ 이하로 가점제 100% 적용)
  - 청약 1순위 자격제한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2순위 청약 가능)
  - 청약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방식,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가점제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추첨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 시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분류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 ②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세대수의 50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

- 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및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소수점 이하는 절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유지되며,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 정보는 파기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은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청약자(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동일 공급유형으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각각 청약(특별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일반공급)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아파트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해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본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되오니, 아래 사항을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2순위로 청약 가능)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과거 5년 이내의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자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및 지역(직장 포함) 주택조합의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3호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및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재개발/재건축) 및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인가일부터 5년간 해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본 아파트의 당첨 또는 계약체결로 인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조합원 분양신청 불가/현금청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업계획승인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입주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
  - **대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해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해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해당첨 제한 대상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가목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제47조 이전기관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해당첨 제한 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7호 가목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 토지임대주택 - 당첨일로부터 5년
  - **청약 제한 사항(과거 당첨 사실 등) 조회 방법** : 본 주택에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 서비스(www.ap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당첨 사실 조회 및 청약 제한사항을 미리 확인하시어 부적격 당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지역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청약 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사용으로 변경되어,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예금, 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가점제 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또한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 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청약 1순위 신청 시 입주자 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만 수도권 거주자로 신청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기타지역)로 봅니다.
  - **분양권 전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특별공급 당첨된 계약세대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함. 또한 본 아파트는 최저층이 2층인 주택형이 있으므로 등촌두산위브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람)

- 제1호 :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제2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제3호 :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
  -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최하층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부칙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1. 분양권등 취득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공급계약-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계약일.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등으로 보지 아니함
          - 가.시행일(2018.12.11.)전 공급계약된 건
          - 나.시행일 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된 건
          - 다.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신청된 건
          - 라.시행일 전 관리처분계획승인(정비사업) 신청된 건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공급계약-준공후-분양권(입주권)", "전매-준공후-분양권(입주권)"의 경우 주택으로 등기되므로 액셀검색결과상 동일물건이 있는 경우 1주택으로 처리됨.
      2. 분양권등 처분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색되어 나타났으나 증여, 경매, 공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 당사자가 소유했던 공급계약서에서 다른 사람에게 명도된 날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5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일정, 청약 신청방법 및 장소, 당첨자 발표일, 지정계약기간 안내**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1순위 당해 (서울 1년이상 거주)	1순위 기타 (서울 1년미만/경기/인천)	일반 2순위 (서울/경기/인천)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b>08월 05일(월)</b>	<b>08월 06일(화)</b>	<b>08월 07일(수)</b>	<b>08월 08일(목)</b>	<b>08월 14일(수)</b>	<b>08월 26일(월) ~ 08월 28일(수)</b>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www.ap2you.com)</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li>*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li> <li>- PC : www.ap2you.com</li> <li>- 스마트폰 : APT2you 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www.ap2you.com)</li> <li>■ 국민은행(www.kbstar.com)</li> </ul>	당사 건본주택 -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3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li> <li>- PC : www.kbstar.com</li> <li>-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li> </ul>		
--	-----------------------------------------------------------------------------------------------------------------------------	--	--

※ 고려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 (10:00 ~ 14:00, 특별공급 신청 해당 접수서류 지참 시 가능, 은행창구접수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 강서구청 주택과 - 26338호(2019.07.2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56-3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최고 20층 4개동 총 156세대 중 일반공급 88세대, 특별공급 68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1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31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2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타입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m <sup>2</sup> )	세대별 대지지분(m <sup>2</sup> )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신혼 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부양	계		
민영 주택	2019-000661	01	31.1700	31	31.1700	10.9933	42.1633	21.2987	63.4620	9.7680	19	2	4	2	1	9	10	1
		02	50.0900	50	50.0900	15.6836	65.7736	34.2267	100.0003	15.6972	38	4	8	4	1	17	21	2
		03	59.9800	59	59.9800	18.6460	78.6260	40.9846	119.6106	18.7965	81	8	16	8	1	33	48	4
		04	64.4600	64	64.4600	18.2931	82.7531	44.0458	126.7989	20.2005	14	1	3	1	1	6	8	1
		05	84.7400	84	84.7400	20.5006	105.2406	57.9032	163.1438	26.5558	4	1	-	1	1	3	1	-
						합계					156	16	31	16	5	68	88	8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sup>2</sup>) × 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 ÷ 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타입	공급 세대수	동별 라인별	층 구분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잔금(20%) 입주지정일	
								계약시	계약후 30일 內	2020.01.20	2020.06.22	2020.11.20	2021.04.20	2021.07.20	2021.10.20		
31.1700	19	104동 2호	2층	1	151,016,000	143,084,000	294,100,000	29,410,000	29,410,000	29,410,000	29,410,000	29,410,000	29,410,000	29,410,000	29,410,000	58,820,000	
			3층	1	155,227,000	147,073,000	302,300,000	30,230,000	30,230,000	30,230,000	30,230,000	30,230,000	30,230,000	30,230,000	30,230,000	30,230,000	60,460,000
			4층	1	159,437,000	151,063,000	310,500,000	31,050,000	31,050,000	31,050,000	31,050,000	31,050,000	31,050,000	31,050,000	31,050,000	31,050,000	62,100,000
			5층	1	163,596,000	155,004,000	318,600,000	31,860,000	31,860,000	31,860,000	31,860,000	31,860,000	31,860,000	31,860,000	31,860,000	31,860,000	63,720,000
			6층 이상	15	167,807,000	158,993,000	326,800,000	32,680,000	32,680,000	32,680,000	32,680,000	32,680,000	32,680,000	32,680,000	32,680,000	32,680,000	65,360,000
50.0900	38	104동 1,3호	2층	2	235,587,000	223,213,000	458,800,000	45,880,000	45,880,000	45,880,000	45,880,000	45,880,000	45,880,000	45,880,000	45,880,000	91,760,000	
			3층	2	242,160,000	229,440,000	471,600,000	47,160,000	47,160,000	47,160,000	47,160,000	47,160,000	47,160,000	47,160,000	47,160,000	94,320,000	
			4층	2	248,681,000	235,619,000	484,300,000	48,430,000	48,430,000	48,430,000	48,430,000	48,430,000	48,430,000	48,430,000	48,430,000	96,860,000	
			5층	2	255,254,000	241,846,000	497,100,000	49,710,000	49,710,000	49,710,000	49,710,000	49,710,000	49,710,000	49,710,000	49,710,000	99,420,000	
			6층 이상	30	261,775,000	248,025,000	509,800,000	50,980,000	50,980,000	50,980,000	50,980,000	50,980,000	50,980,000	50,980,000	50,980,000	50,980,000	101,960,000
59.9800	81	101동 1,2호 102동 1,2,3,4호	2층	4	281,647,000	266,853,000	548,500,000	54,850,000	54,850,000	54,850,000	54,850,000	54,850,000	54,850,000	54,850,000	54,850,000	109,700,000	
			3층	5	289,452,000	274,248,000	563,700,000	56,370,000	56,370,000	56,370,000	56,370,000	56,370,000	56,370,000	56,370,000	56,370,000	112,740,000	
			4층	6	297,257,000	281,643,000	578,900,000	57,890,000	57,890,000	57,890,000	57,890,000	57,890,000	57,890,000	57,890,000	57,890,000	115,780,000	
			5층	4	305,113,000	289,087,000	594,200,000	59,420,000	59,420,000	59,420,000	59,420,000	59,420,000	59,420,000	59,420,000	59,420,000	118,840,000	
			6층 이상	62	312,918,000	296,482,000	609,400,000	60,940,000	60,940,000	60,940,000	60,940,000	60,940,000	60,940,000	60,940,000	60,940,000	60,940,000	121,880,000
64.4600	14	102동 5호	2층	1	296,435,000	280,865,000	577,300,000	57,730,000	57,730,000	57,730,000	57,730,000	57,730,000	57,730,000	57,730,000	57,730,000	115,460,000	
			3층	1	304,651,000	288,649,000	593,300,000	59,330,000	59,330,000	59,330,000	59,330,000	59,330,000	59,330,000	59,330,000	59,330,000	118,660,000	
			5층	1	321,134,000	304,266,000	625,400,000	62,540,000	62,540,000	62,540,000	62,540,000	62,540,000	62,540,000	62,540,000	62,540,000	125,080,000	
			6층 이상	11	329,350,000	312,050,000	641,400,000	64,140,000	64,140,000	64,140,000	64,140,000	64,140,000	64,140,000	64,140,000	64,140,000	64,140,000	128,280,000
84.7400	4	103동 1,2호	4층	1	388,093,000	367,707,000	755,800,000	75,580,000	75,580,000	75,580,000	75,580,000	75,580,000	75,580,000	75,580,000	75,580,000	151,160,000	
			6층 이상	3	408,530,000	387,070,000	795,600,000	79,560,000	79,560,000	79,560,000	79,560,000	79,560,000	79,560,000	79,560,000	79,560,000	159,120,000	

## ■ 공통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자체심의 결과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초과하는 주택형은 건축비 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상복합 아파트로서 동일 주택형의 아파트라도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에 대해 무상제공품목 및 마감재 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임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 플러스옵션 품목 등)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품목은 발코니확장 선택 시 가능)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의거)
- 용도별 대지지분은 아파트 주택형별 공급면적의 합계,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계약면적의 합계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되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별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연체료 납부 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시점 이후 중도금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주택의 사용 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 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철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 X 0.3025 또는 공급면적(m) ÷ 3.3058)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함.

##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31	50	59	64	84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서울시 장애인	1	1	2	-	1	5	
	국가유공자 외(보훈처 추천)	1	1	1	-	-	3	
	장기복무 제대군인	-	-	1	-	-	1	
	중소기업 근로자	-	1	2	-	-	3	
	장기복무 군인(국방부 추천)	-	1	2	1	-	4	
	계	2	4	8	1	1	16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3	6	12	3	-	24
		일반공급(25%)	1	2	4	-	-	7
		계	4	8	16	3	-	3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지역기준	서울시 1년이상 거주(50%)	1	2	4	1	1	9
		서울시 1년미만, 경기, 인천(50%)	1	2	4	-	-	7
		계	2	4	8	1	1	1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	1	1	1	1	5	
합 계		9	17	33	6	3	6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서울시 강서구는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조 제5항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 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계약체결 불가, 부 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ul>

	<p>-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p> <p>가. 주택공급신청자</p> <p>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p> <p>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p>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p>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청약자격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p> <p>-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입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입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p style="text-align: center;"><b>[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 분</th> <th style="width: 25%;">서울특별시</th> <th style="width: 25%;">인천광역시</th> <th style="width: 25%;">경기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재당첨 제한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당첨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아래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신중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p> <p>(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p> <p>※ 당첨주택형별 재당첨 제한 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당첨일로부터 5년), 과밀억제권역85㎡초과(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 외85㎡이하(당첨일로부터 3년), 과밀억제권역 외85㎡초과(당첨일로부터 1년)</p> <p>※ 청약 제한사항(과거 당첨사실등) 조회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p>																				

■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p>•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국가유공자), 3호(국가보훈대상자), 8호에 의거 제35조제1항제6호(장기복무제대군인), 7호(군인복지기본법), 17호(장애인), 23호(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 특별공급 해당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p> <p>※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에 한해 신청 가능함.</p> <p>• 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단, 국가유공자, 국가 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p> <p>※ 추천기관</p> <p>①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p> <p>②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 복지단</p> <p>③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p>	<p>• 공급 세대수 : 전용 85㎡이하 주택형별 건설량의 10% 범위 내</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p> <p>•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p> <p>•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p> <p>(미 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불가)</p>

<p>다자녀가구 특별공급</p>	<p>④ 중소기업 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 서울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청약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임을 입증해야 함.</li> <li>※ 자녀수에는 임신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처리됨)</li> <li>※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li> <li>※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li> <li>※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영지침」관련 법령에 따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 세대수 : 전체 주택형별 건설량의 10% 범위 내</li> <li>「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에 대상 세대수의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li> <li>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li> <li>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자</li> </ol> </li> </ul>
<p>신혼부부 특별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li> </ul> </li> <li>청약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li> <li>※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li>※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 하여야 함.</li> <li>※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li> <li>※ 기타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 세대수 : 85㎡이하 주택형별 건설량의 20% 범위 내</li> <li>신혼부부 우선공급 : 대상 주택수의 75퍼센트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이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한다)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함.</li> <li>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입양을 포함. 임신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li> <li>② 2순위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li> </ol> </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2호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 선정 순서(소득→순위→거주지역→미성년자녀수), 2순위 경쟁시 동일방법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선공급 75%→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미성년자녀수 많은자→추첨</li> <li>▷일반공급 25%→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미성년자녀수 많은자→추첨</li> <li>(※ 일반공급 25% 선정 시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선정)</li> </ul> </li> </ul> </li> <li>① 소득기준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선공급 75% : 소득 100% 이하(부부합산 120%이하)</li> <li>(2) 일반공급 25% : 소득 120% 이하(부부합산 130%이하)</li> </ol> </li> <li>② 순위 - 같은 소득기준 및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주택건설 지역(서울특별시) 1년이상 거주한자</li> <li>(2)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수가 많은 자(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단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li> <li>(3)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li> </ol> </li> </ul> <p>※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자녀수를 선정할 때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선정. 단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됨.</p>
<p>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1년이상 거주자, 서울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li> <li>청약자격요건 : 청약 1순위 요건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청약제한이 적용되므로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의 속한 자는 신청이 불가함</li> <li>※ 무주택기간 선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청약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선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 세대수 : 전체 주택형별 건설량의 3% 범위 내</li> <li>동일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서울특별시 1년이상 거주자가 우선함.</li> <li>②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2호 나목의 청약 가점점수 선정기준표로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기준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선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li> </ul> </li> </ul> </li> </ol> </li> </ul>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별표1에 의거한 소형자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함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영지침」관련 법령에 따름.	
--	---------------------------------------------------------------------------------------------------------------------------------------------------------------------------------------------------------------------------------------------------------	--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입주선정 결과는 개별통지 하지 않고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발표하며(APT2You),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업무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합니다. (동호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다자녀 특별공급 운영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사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2018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401,814원	6,165,202원	6,699,865원	7,348,891원	7,997,917원	8,646,943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482,177원	7,398,242원	8,309,838원	8,818,669원	9,579,500원	10,376,332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401,815원 ~ 6,482,177원	6,165,203원 ~ 7,398,242원	6,699,866원 ~ 8,039,838원	7,348,892원 ~ 8,818,669원	7,997,918원 ~ 9,597,500원	8,646,944원 ~ 10,376,332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482,178원 ~ 7,022,358원	7,398,243원 ~ 8,014,763원	8,039,839원 ~ 8,709,825원	8,818,670원 ~ 9,553,558원	9,597,501원 ~ 10,397,292원	10,376,333원 ~ 11,241,026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 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인 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49,026)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월)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②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으로 인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에 관한 유의사항**

구분	내용
당첨 동호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li> <li>특별공급 대상 주택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함</li> <li>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7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 될 수 있음</li> </ul>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금융결제원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li> <li>특별공급은 주택형별 해당 세대수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li> <li>②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li> <li>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세대수의 50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li> <li>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함</li> </ol> </li> <li>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가능 (단,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기간 내 무주택이어야 함. 부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12.11)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신혼 기간 내 주택 소유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 시 2순위 해당)</li> <li>특별공급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li> <li>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며,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만 65세이상 신청자에 한해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 한 경우만 방문접수(건본주택) 가능함.</li> <li>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동일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취소되고 일반공급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li> <li>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 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다 무효 처리함.</li> </ul>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예비대상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공급(선택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공급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 공급 예비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 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 모두를 부적격 처리함.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 된 신청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 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 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연속 1년 이상 거주(외국에 거주한 기간 제외)하거나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양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포함도 청약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의 속한 자, 2주택(분양권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일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되며, 청약 2순위로 신청가능함</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수도권(경기/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본 주택의 해당순위 1순위 24개월)입주자 저축 요건 및 해당 주택건설 지역(서울시 1년 이상)에 거주 요건 충족 시 당해 1순위 청약 가능) ※ 청약 신청유의사항,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 바람.</li> <li>■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 및 제4조 5항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외국에 거주한 기간 제외)한 신청자가 서울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자 보다 우선함.</li> </ul>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함.</li> <li>■ 본 주택은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해당제한 주택(규칙 제3조제2항 각호 (3호, 5호, 7호, 및 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제한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주택의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의 청약이 제한 됨.</li> <li>■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 한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 됨. (2순위로만 청약 가능)</li> <li>■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추첨제)이 분류 됨.</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 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li> <li>(2)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li> </ol> </li> <li>■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li> <li>■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자.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li> <li>■ 중복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 주택포함)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세대 1건만 신청가능), 1세대 2건 이상 신청하여 2건 이상 당첨 시 해당제한된 위안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li> <li>■ 청약통장 관련 준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가능함.</li> <li>(2)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3)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4)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 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면적 청약 가능함)</li> </ol> </li> <li>■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li> <li>■ 해당청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해당청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li> </ul>

	<p>이르고 있는 세대원은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 자격제한의 적용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제한(1순위 자격제한, 재당첨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함. 주택형별 2순위 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함. ※ 신청한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점수와 비교하여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 됨.</li> <li>■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기간 :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li> <li>■ 서울의 경우 전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당해지역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지역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첨자에 해당하고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 후 당첨되는 경우 공급받을 수 있음)</li> </ul>
--	------------------------------------------------------------------------------------------------------------------------------------------------------------------------------------------------------------------------------------------------------------------------------------------------------------------------------------------------------------------------------------------------------------------------------------------------------------------------------------------------------------------------------------------------------------------------------------------------------------------------------------------------------------------------------------------------------------------------------------------------------------------------------------------------------------------------------------------------------------------------------------------------------------------------------------------------------------------------------------------------------------------------------------------------------------------------------------

###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분양권등 포함)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100%가점제)</li> <li>(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한 주택 또는 분양권등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li> <li>(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li> <li>(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자</li> <li>(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4)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서울특별시 /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1순위 청약제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됨 (2순위로 청약가능)</li> <li>(1) 세대주가 아닌 자</li> <li>(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li> <li>(3)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li> </ul>	
	2순위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li> </ul>	
		2순위 청약제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li> </ul>	

###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① 무주택 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 (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p>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의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미혼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li> <li>※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	-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 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 19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li> <li>(1) 만19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li> <li>(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2년이상 ~ 3년미만	4	9년이상 ~ 10년미만	11	※ 자동계산에 의거 별도 확인 필요없음
		3년이상 ~ 4년미만	5	10년이상 ~ 11년미만	12	
		4년이상 ~ 5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13	
		5년이상 ~ 6년미만	7	12년이상 ~ 13년미만	14	
		6년이상 ~ 7년미만	8	13년이상 ~ 14년미만	15	
		7년이상 ~ 8년미만	9	14년이상 ~ 15년미만	16	
8년이상 ~ 9년미만	10	15년이상	17			
총점	84					
비고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 당첨자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형별/청약 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까지 청약 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li> <li>■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결정함.(단, 만65세 이상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배정함)</li> <li>■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서울특별시 1년 미만, 수도권(경기/인천)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1년미만, 수도권(경기/인천)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li> <li>■ 가점제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2.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li> </ul>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은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 단 발표 시 함께 발표 됨)</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 됨.</li> <li>■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공개함.</li> </ul>

## IV 청약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b>2019.08.05(월)</b> (인터넷청약 : 08:00~17:30) (방문접수 : 10:00~14:00)	• 인터넷 청약 (APT2you)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2you.com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방문접수 : 인터넷청약 불가능한 신청자(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만 65세 이상자) 에 한해 건본주택 방문접수(단, 신청서류 미비시 방문접수 불가)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 (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 특별공급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접수 장소에 비치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등본	본인	현 거주지, 거주기간, 세대원 등 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및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인감도장' 제출 생략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인터넷 접수시 해당없음)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2you.com)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함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명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해당자	비사업자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 존비속 (해당자 모두)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 발급)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자 직계비속	만18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감도장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건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선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①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건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접수장소	

■ **일반공급 청약 방법**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접수일	신청방법
일반공급	1순위 (당해)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	2019년 08월 06일(화요일) 08: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li> <li>■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KB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가입자) PC(www.ap2you.com) / 모바일(APT2you 앱)</li> <li>■ KB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혹은 모바일뱅킹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KB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은행, 신한은행</li> <li>※아래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1순위 (기타)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019년 08월 07일(수요일) 08:00~17:30	
	2순위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019년 08월 08일(목요일) 08:00~17:30	

※ 1순위 청약일정 분리에 따른 청약 시 유의사항

- (1)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는 1순위 "당해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기타지역" 접수일에는 청약 불가 (위반 시 부적격 처리)
- (2) 서울특별시 1년 미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당해지역" 접수일에는 청약 불가 (위반 시 부적격 처리) → ※1순위(당해)지역 청약마감 시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3)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함.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r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초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KB국민은행(KB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r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 「주택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r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li>※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li> </ul>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가산일 신청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란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주택형별 해당 세대수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li> </ul>

	<p>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외국에 거주한 기간 제외)한 신청자가 기타 서울시(서울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가인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선정된 예비입주자 수가 예비입주자 총수에 미달되거나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건본주택)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와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건본주택)에서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li> <li>•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할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li> </ul>

## V 당첨자 발표

###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b>2019. 08. 14(수요일)</b></li> <li>• 확인방법</li> <li>-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또는 APT2you 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li> <li>- <b>2019. 08. 26(월)~ 2019. 08. 28(수) (10:00~16:00)</b></li> <li>• 장소</li> <li>- 당사 건본주택</li> <li>(장소 :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34-5 등촌 두산위브 건본주택)</li> </ul>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를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

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함.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미 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 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 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
- 동일 주택형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 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회차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지위를 인정함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9.08.14.(수) ~ 2019.08.23.(금) (10일간)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 - 조회」⇒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전화(ARS)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서비스 종료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특별공급 제외)	
	제공일시	2019. 08. 14(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ARS(국민없이 1369)서비스는 2017.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함.

## VI

## 계약체결 안내

###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을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1차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버서류와 해당 추가 구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안내	2019. 08. 26(월) ~ 2019. 08. 28(수) 3일간, 10:00 ~ 16:00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34-5, 등촌 두산위브 건본주택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명
분양대금 관리계좌	국민은행	830501-04-189695	대한토지신탁(주)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공급대금 납부에 대하여 별도로 가상계좌를 안내 또는 고지할 경우에 반드시 해당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가상계좌로부터 상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가상계좌는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예 :501동 501호 홍길동의 경우, 성명란에 "5010501" 또는 "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지정계약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향후 금융기관과의 CMS 체결로 타행 입금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요망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함.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부적격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하여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4)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혹은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 부활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여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 됨.
- 서울시 강서구는 청양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급 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함.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함.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볼.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계약체결 전 서류 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계약 시 아래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취소,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당첨제한 등) 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람

## ■ 계약자 대출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한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2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한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도 등 제한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상(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도 등 제한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함.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의 일부분양세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규제(분양가 9억원 초과)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하며, 이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해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대출금 신청을 위한 금융기관에 대출알선을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 하지 않음, 미납 시 연체료 가산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조달 불가로 인한 이익제기 및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특별공급포함)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건보주택에서 계약금 (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용 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본인	현 거주지 거주기간, 세대원 등 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및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 상 거주 기간 확인이 불가할 경우(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1순위 당첨시)	○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직계존속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 초본	직계존비속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 증명서	본인/직계 비속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복무확인서 및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 2년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공급 받으려는 자 (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수도권 거주자로 당첨 시 )
대리 계약시 추가구비서류	○	상기 서류 외 계약자인감증명서(위임용) 대리인 신분증, 도장	-	본인 외 모두(배우자 포함) 제3자로 간주 / 대리인계약은 가족에 한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	건물등기부 등본	해당 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시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서류	해당 시	전산 검색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서류	해당 시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금융결제원 발급)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li> <li>■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거주기간 선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li> </ul>			

## Ⅶ 추가 선택품목 계약

###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 ① 발코니 확장공사 위치 및 확장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확장위치	확장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시점 시
31	거실, 침실1, 침실2	6,700,000	670,000	6,030,000
50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욕실2	14,100,000	1,410,000	12,690,000
59	거실, 드레스룸, 침실2, 침실3, 주방/식당	12,600,000	1,260,000	11,340,000
64	거실, 현관, 드레스룸, 침실2, 침실3, 주방/식당	14,100,000	1,410,000	12,690,000
84	거실, 드레스룸, 침실2, 침실3, 알파룸, 주방/식당	14,800,000	1,480,000	13,320,000

※계약금 10%, 잔금 90%임. 회사에서 납부 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입금계좌는 하단에 표기)

#### ② 발코니 확장 시 유의사항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2010.02.18 개정 사항)
- 발코니 확장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등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세대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하며, 주택형별 패키지로만 가능함)
- 기본형 선택 시에는 외부 창호가 설치되지 않음.
- 시공상 및 계약관리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자체발주 문제로 인하여 중도금 납부일자 이후에는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능함.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경우 동질 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예: 옆세대 비확장시 단열에 의해 내부벽이 단열두께만큼 돌출될 수 있음)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사시, 유리창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선홍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사하였으며 비 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③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항목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품목 공사비	국민은행	830501-04-189950	대한토지신탁(주)

④ 발코니 확장비 납부방법 및 유의사항

-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공급금액 납부 약정일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음
- 상기의 발코니 확장비 납부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추가선택 유상옵션 입금계좌와 상이하오니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계약금(10%) 납부 - 계약 시 상기의 계좌로 입금 후 건본주택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 등) 제출 [ 건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향후 세대별 가상계좌가 부여될 경우(계약 시 별도 안내함) 상기의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람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납부약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 된 것으로 함(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착오납입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 (무상옵션 : 발코니확장 시 선택 가능)

구분	주택형	선택사항	비고
공용욕실	50	소형 욕조	타워부스 선택 시 타일마감은 변경없으며, 하부 인조석 쉼 및 샤워부스가 설치됨
		샤워 부스	
		택 1	

■ 추가선택품목 (플러스옵션)

① 주방 가전 [발코니확장시 선택 가능]

(단위: 원 VAT포함)

품목	주택형	제품명	금액	비고
TBI냉장고	공통	삼성전자(BRS665040SR)	5,700,000	가전, 가구 각각 선택 불가
TBI김치냉장고+키친 장	공통	삼성전자(RQ22K5L01EC : 패널/тол장 포함)	1,750,000	
전기오븐	공통	SK매직(EON-B450M)	350,000	

- ◆ 빌트인 김치냉장고는 공간특성상 키친 장과 함께 선택이 가능함 (개별 구매 불가)
- ◆ 빌트인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선택 시 기본형에 제공되는 상부 플랩(Fab) 수납장은 미시공 됨
- ◆ 빌트인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미선택 시 기본형 가구로 시공(뒷벽은 도배 마감임)되며,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 31주택형은 주방공간이 협소하여 김치냉장고, 전기오븐 설치 및 플러스옵션 선택이 불가하며, 선택이 가능한 주택형은 플러스옵션 미선택 시 일반 수납장으로 시공됨
- ◆ 주방가전 선택품목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 및 가구 색상(김치냉장고 패키지형)이 주택형마다 상이할 수 있음
- ◆ 주방가전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시장상황 등의 변화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②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발코니확장시 선택 가능]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	설치 위치 선택		금액	비고
31	기본(실내기 2대)	거실/주방 + 침실1	3,100,000	공기청정 미적용이며, 실 명칭은 변경될 수 있음
	전체(실내기 3대)	거실/주방 + 침실1 + 침실2	4,200,000	
50	기본(실내기 2대)	거실/주방 + 침실1	3,400,000	
	전체(실내기 4대)	거실/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5,800,000	
59	기본(실내기 2대)	거실/주방 + 침실1	3,450,000	
	전체(실내기 4대)	거실/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5,900,000	
64	기본(실내기 2대)	거실/주방 + 침실1	3,450,000	
	전체(실내기 4대)	거실/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5,900,000	
84	기본(실내기 2개)	거실/주방 + 침실1	3,700,000	
	전체(실내기 5대)	거실/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룸	7,500,000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 상기 주택형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함
- ◆ 실외기실은 건축계획 내용에 따라 외부선반 거치형(50/59/84), 실외기공간 설치형(31/64), 외부 테라스 공간(116/150) 설치형으로 구분되어짐
- ◆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부가세포함)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본 설치품목인 에어컨냉매 매립배관 및 해당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으며, 미설치 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 시스템에어컨은 확장시에만 옵션선택이 가능하며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시장상황 등의 변화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 안방 총 2개소의 냉매배관 및 해당 콘센트가 시공됨
-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됨

③ 현관 중문 [발코니확장시 선택 가능]

(단위: 원, VAT포함)

품목	주택형	위치	구 분	금액	비고
현관 중문 (50주택형 제외)	31	현관	3연동 슬라이딩형	1,450,000	설치위치, 디자인 및 마감재 변경 불가하며, 중문설치로 인해 현관 깊이가 축소됨
	64		양개 여닫이형(250mm+850mm)	1,700,000	
	59/84		3연동 슬라이딩형	1,550,000	

- ◆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 및 디자인 변경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 50주택형은 평면구조상 중문설치가 불가하여 제외됨
- ◆ 현관중문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음
-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 할 수 없음
- ◆ 현관중문 미선택시 중문틀은 미시공되며, 날개벽이 설치되고(64주택형은 날개벽 없음) 현관디딤판 폭은 300mm로 시공됨

④ 거실 및 주방 바닥타일 [발코니확장시 선택 가능]

(단위: 원, VAT포함)

품목	주택형	금액	비 고
거실 및 주방 바닥타일	31	800,000	전주택형 동일 타일 적용
	50	1,150,000	
	59	1,400,000	
	64	1,550,000	
	84	1,900,000	

- ◆ 건본주택에는 플러스옵션인 타일로 시공되어 있으며, 미선택 시 침실과 동일한 강마루로 시공됨



⑤ 플러스옵션 납부계좌안내

■ 추가선택 품목(옵션) 설치비

금 용 기 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KEB 하나은행	630-005401-911	두산중공업(주)

- 공급시기 : 공동주택 공급계약(발코니확장 선택)과 별도로 플러스옵션 선택품목(유상 옵션) 계약을 진행할 예정임(정확한 일자자는 추후 통보함)

⑥ 납부방법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단, 추후(계약전 등)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안내할 경우 반드시 해당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계약금 납부 : 계약시 아래 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유상옵션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에 준함.

⑦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마루,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 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 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에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바닥재	바닥재(강마루, 현관바닥타일, 현관 디딤판), 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재료분리대 등(시멘트 몰탈포함)	바닥난방 + 시멘트 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세탁실 바닥방수, 발코니 우수선출통
벽천정	벽지 및 천장지(조배지 포함), 벽 및 천장 도장, 거실아트월(타일 시트 등), 경량칸막이, 주방벽타일, 물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벽체 : 단열+석고보드/미장/콘크리트면처리 또는 시멘트몰탈 천장 : 천장틀+석고보드
조명기구	부착형, 거치형 조명등기구	배관 · 배선류(콘센트, 스위치)
욕실	천장재(천장틀 포함), 타일(바닥, 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욕조를 등), 샤워부스, 수전류, 욕실 환기구, 욕실장, 액세서리, 콘센트, 스위치, 코킹, 재료분리대, 욕실폰, 비데	조적, 방수, 미장,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주방기구	주방기구 및 가구(상판 및 약세서리 포함), 각종 선반, 벽타일, 설비수전류, 주방TV폰, 주방가전, 일체(전기오븐, 렌지후드, 쿡탑, 음식물탈수기 등)	설비배관
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드레스룸장, 화장대, 침실불박이장, 수납장, 각종선반	
창호	목재문(문틀, 문짝, 상부덧판, 문선), 창호철물일체(도어록, 경첩 등), 디지털도어록	목재문(공틀문포함) 가들(사춤 및 욕실문 하부실 제외), 발코니 내부 PVC창호(시트지 제외), 세대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 마이너스옵션 금액

(금액: 원, VAT포함)

주택형(전용면적/㎡)	31	50	59	64	84
기본선택(마이너스옵션)	8,442,000	12,745,000	16,297,000	15,993,000	19,934,000

- 마이너스옵션 신청은 계약 시 선택가능하며, 신청 이후에는 자재 발주 문제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 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함.

-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한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신청이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서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마이너스옵션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됨.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한 경우에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해야 함.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시공한 시설은 적절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계약자는 계약 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및 설치관련 확인서를 작성해야 함.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 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당사와 무관하게 계약자의 개별적인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설정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건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나,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 함.
- 상기 마이너스 옵션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주택형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㉔ 건축물 관련 인증 : 주택법 제39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에 의해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지 않음.

## Ⅷ 기타 계약자안내

###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당사는 국토교통부 “입주자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 할 예정임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도착 → ③ 접수, 교육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전 보수완료 → ⑦ 보수완료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 ■ 입주예정일 : 2022년 3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 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음

###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노인정, 문고, 맘스라운지, 주민공동시설(Fitness Center 등)

### ■ 주차창 출입 가능한 제한높이는 2.3m 미만임.

###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 됨

### ■ 감리 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	전기/정보통신	소방	비고
회 사 명	(주)세현건축사사무소	(주)진원엔지니어링	(주)대한소방기술단	
감리금액	312,400,000원	52,800,000원	52,800,000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 될 수 있음.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항목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 의무사항 이행여부 검토		
고기밀 창호	적용	발코니를 확장한 거실 부위의 창호는 KS F 2292에 의한 1등급 이상 제품 적용(침실1은 비확장이며, 2등급)
고효율 기자재	적용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보일러, 펌프, 전동기)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대기전력차단센트를 거실, 침실, 주방에 1개씩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 현관에 설치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의 조명기구는 고효율 조명기구로 정의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적용	공용화장실 내 자동점멸 스위치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실별로 온도제어가 가능한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세대 내 수도꼭지 및 샤워수전은 관련법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 임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68,707,680,000원	제01282019-101-0008900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관련한 사항

1. (주)대한토지신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관련 표준사업약정서 체결과 동시에 장래에 발생할 "등촌 두산위브 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금채권(조합원 및 일반분양 수입금을 포함)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한다.
2. 제1항에 따라 "(주)대한토지신탁"은 등촌 두산위브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을")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을 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홈오토, 발코니사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IX 유의사항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등기사항증명서:등기접수일 ② 건축물관리대장:처리일 ③ 기타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시장또는 군수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날 ]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주택건 설치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모집승인권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함)
  - ⑥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 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⑧ 무허가 건물(중천의 「건축법」(법률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것을 말한다)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⑨ 일반공급 청약 가점제 신청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제1호 가목2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주택공시가격”이라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단, 청약가점제 시행전인 2007년 9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조)
  - ⑩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 기타유의사항

#### □ 기타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 기 청약자격 전산수룩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 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룩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 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정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직접 일치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인화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증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되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과는 오차가 생길 수 있음.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2째 자리로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보증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당 사업지는 추상복합 건물로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내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 토지)이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및 최종 측량성과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상호 정산기로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 보증관현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시설, 조망권, 주변개발여건, 유타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가다록 등) 및 분양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조감도, 투시도, 각종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외부 및 창호의 형태 및 색채,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주변환경, 부지의 고저차 등), 공급간지,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당시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 없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공급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으므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실입주일이 만료일보다 앞서는 경우 실입주일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전기료, 가스비 등 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함</li> <li>•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관리비예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li> <li>•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우구)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li> <li>•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li> <li>•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과 무관한 사항임</li> <li>•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li> <li>• 세대 내부 플라스옵션 계약관련 내용 및 계약 일정 등에 대해서는 공급계약 체결 후 개별 공지 예정임</li> <li>• 본인 등 · 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아트월과 소파 설치 위치가 좌우 대칭되어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음)인 주택형이 있음</li> <li>• 세대별 피난은 발코니에 비상시 대피를 위해 발코니 대피공간 또는 세대간 발코니에 탈출을 위한 경량벽체로 주택형별로 상이함</li> <li>•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 조정공간(식재, 시설물, 기부채납부지 등), 단지 내/외 도로(고원식 횡단보도, 인도, 차도, 비상차량 통선 등)등은 실시공 시 인허가 관형별이나 공사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평면, 입면,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공급계약 이후, 공사 중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 실시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진행 중에 설계개선 또는 오류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 변경 및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닌 건축허가변경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필요 시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할 예정임</li> <li>•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상복합 건물로 인접건물 및 입주예정 주택이 동간 거리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을 원칙으로 함</li> </ul>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 및 건축허가(분양 시 변경예정 사항을 우선함)도서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재 및 부대편의시설, 단지조경(수목, 수공간 및 시설물), 커뮤니티시설 내부 가구 및 집기 등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li> <li>• 본 아파트 입주 후, 본 사업부지와 인접한 부지의 건축물 신축 및 개축으로 인해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주변 개발계획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li> <li>•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입주자 등과 대치, 건축물, 조경(식재, 시설물 등 조정계획 일체), 보도, 차로, 건축기계전기 설비 등을 공유함에 따라, 일조, 소음, 프라이버시, 빛 공해 등의 각종 생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동 구역은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나, 항공기 노선에 따라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ul>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세대 마감재(창호 및 가구 포함)는 주택형별에 따라 재질, 색상, 패턴, 크기 및 길이, 형태, 공간별 적용 아이템 등이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건본주택 및 모형, 카탈로그에 반영된 평면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li> <li>• 내외부 마감재가 건축허가 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본주택을 우선으로 함</li> <li>• 인테리어마감 컨셉은 50주택형(31주택형과 동일), 59주택형(64/84/115/150주택형과 동일) 2가지 유형이며, 디자인 및 구성품은 주택형별 공간 및 평면구성 등의 내용에 따라 상이함</li> <li>• 31주택형에는 타 주택형과 달리 기본 제공되는 침실 1개소의 붙박이장이 수납장+화장대형으로 설치되며, 화장대 거울은 일반형 거울이 적용됨</li> <li>• 가구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바닥난방 포함)가 시공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욕실장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li> <li>- 고정형 가구 하부 및 후면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li> <li>-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li> <li>- 주방가구 하부(난방 포함) 및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li> </ul> </li> <li>• 세대에 적용된 가구, 마루, 창호, 소방설비, 샤워부스 등은 건본주택 용으로 실시공 시 입찰결과에 생산업체가 결정되어 반영됨</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거실/주방 바닥의 폴리싱타일은 플라스옵션으로 미선택시 강마루가 시공됨</li> <li>• 어린이의 손끼임 방지를 위해 관련기준에 따라 거실에 면한 출입문에 손끼임방지재가 설치되며, 실시공 시 동일한 재질이나 형태, 크기,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에 적용된 타일은 실시공 시 건본주택과 동일한 제품이라도 타일 문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강마루의 색상, 시공방향도 다소 상이할 수 있음</li> <li>•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됨</li> <li>• 내외부에 천연자재가 적용되는 경우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li> <li>• 건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 중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li> <li>•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전용공간 내부 바닥, 벽, 천장 마감재는 미적용됨</li> </ul>
건본주택/홍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일정기간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li> <li>• 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포함 품목(분양승인 신청서류 기준)과 전시품(조명, 가구, 그림, 장식물, 각종 소품 등)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분양승인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됨(커뮤니티시설 포함)</li> <li>•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홀 및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및 탑승위치 등)은 최종 건축허가도서(공사 중 건축허가변경 포함) 및 실시설계도서에 준함</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주택형을 제외한 미건립 주택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노톤 모형으로 제작되었으며, 자세한 마감재 칼라 및 내용은 건본주택에 설치된 건립타입 및 건축허가 도면을 참고하여야 하며, 마감재 디자인 및 설치 내용은 주택형별 공간 특성으로 인해 상이함</li> <li>•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나,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과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선홍통, 배수구, 점검구,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온도조절기,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VR 동영상은 건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 동영상이므로 건본주택의 전시품목 안내 및 건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li> </ul>

■ 설계관련 주요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없으시기 바람)

구분	내용
설계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화설계를 진행하면서 당초 인허가 내용에서 외관디자인(저층부 석재 3개층 → 2개층 적용 포함) 및 중앙광장 등의 조정시설물이 변경되어 단지모형 및 각종 CG 등 분양홍보물에 이를 반영하였으나, 건축재심의 및 건축허가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분양개시 후, 계약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신속하게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변경을 통해 실시공 시 반영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지하주차장의 파일 및 기초형식 등은 굴도 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본 주상복합건물은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한 동의사항 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li> <li>•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 관련법에 따라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과 업무시설의 오피스텔로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계약시 입주예정자에게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아 변경 시 이 동의에 따라 건축허가 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최상층에 건립되는 116㎡형을 59㎡형 2세대로 150㎡형을 84㎡형 2세대로 변경될 수 있어 계약시 입주예정자에게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것이며, 건축허가 변경 신청시 이 동의에 따라 건축허가 변경을 받을 예정이며 이 변경으로 대지분인이 다소 감소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건축허가 변경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관련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계약시 입주예정자에게 경미한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것 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ul>
단지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상복합으로 일반주거지역의 공동주택과 달리 인동거리 등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접 동 및 인접 세대, 인접 건물 등에 의해 각 세대의 조망과 향, 일조량, 프라이버시 등이 불리하므로 건본주택에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li> <li>•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의 외관디자인(마감재 패턴, 색채 및 사인물, 창호 및 난간 형태 및 색상, 지붕 및 옥상구조물 형태, 보일러 연도 및 급배기구 노출, 필로티 낙하방지용 캐노피 형태 등), 보도 포장 및 형태 등이 실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특화를 위해 설계예정인 문주 등의 디자인 및 재료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외부 공간에 조성되는 수목의 종류, 수량 및 위치, 외부 시설물의 종류, 형태 및 위치 등은 실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모형 및 각종 홍보물 이미지는 축소 제작되는 한계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색채, 패턴, 마감재질, 크기, 조경(수목의 종류, 위치 및 수량, 휴게시설, 파고라, 수경시설 등) 및 각종 시설물(기계 및 전기관련설, 급배기구 등)의 내용이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실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부, 공용부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음</li> <li>•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단지 주위 도로폭, 도로선형, 조경 및 토목 시설물의 위치, 인접도로와의 레벨차 공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설계변경 될 수 있음</li> <li>•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기본 제공되는 집기 및 마감재 등이 현장여건 및 인테리어설계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현장여건 및 인테리어설계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레이아웃 및 운동기구 배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지 내 레벨은 건물 입구 및 인접 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 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환풍, 실외기실, 각종 DA(급배기구) 등의 지상 돌출물로 인해 저층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li> <li>•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건축 및 조경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에 대해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음</li> <li>• BI/CI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및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적용 시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li> <li>• 쓰레기분리수거함 및 재활용품 보관고 인접세대에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 및 건물 높이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li> <li>•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야간 주차장 이용 시 차량전조등으로 인해 102동 일부 저층 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이 설치된 인접 동은 이용에 따른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냉난방시설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아파트 각 동별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은 옥상에 공동시청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엘리베이터 홀(채광창 유무 포함) 등 공용부분은 동선 길이, 공간 크기 및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크기, 색채 등이 동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li> <li>•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li>• 지하 최하층 바닥 및 흙에 면하는 벽체에 유도 배수를 위해 건식배수판이 반영될 경우, 별도 방수는 적용되지 않음</li> <li>•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한 안전매트 설치 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그 위치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불가능함</li> <li>•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분양 이후 위치 및 내용이 확정됨</li> <li>•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li> </ul>

구 분		내 용
단지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형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단지 주변 경계부는 현장 시공여건, 현황 레벨, 인근 도로레벨에 따라 단차부 마감에 대한 형태, 재질 등이 실시설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li> <li>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현장여건 등을 위하여 문주, 열주의 추가, 도로시형 변경, 부대시설의 추가 및 삭제, 위치이동, 형태 등이 실시공 시 설계변경 될 수 있음</li> <li>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는 사용성 및 지체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li> <li>무인택배보관함은 경비실에 통합형으로 설치될 예정으로 실시공 시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간에 맞게 설치 수량이 반영될 예정임</li> <li>단지 주변도로와 단차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C 및 B 조명(설치 시) 등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li> <li>주상복합의 특성 및 인허가 조건에 따라 비주거를 위한 주차는 지하 1층, 주거를 위한 주차는 지하 2층 ~ 지하 3층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li> <li>지하주차장의 동별 주차배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없으며, 각종 출입구까지의 동선길이가 다름</li> <li>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축물에 의하여 조광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li> <li>각동 주차입구 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자방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li> <li>공공의 목적으로 통행되는 필로티 상부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피해가 있을 수 있음</li> <li>휴게공간, 관리동, 주민공동시설 설치로 인해 인접한 세대는 소음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ul>
단지	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위세대 및 공용홀(계단실 포함)의 창 의 열림 방향, 창호 나누기, 크기 및 위치(자동폐쇄장치 포함), 프레임의 사양 및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li> <li>아파트동 저층부 2개층 및 근린생활시설동 외벽은 지정석재(포천석 또는 오련회교)이며, 색상, 패턴 및 마감준의 간격 등은 시공사의 특화설계 및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자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등 장애인관련 시설은 지체체 관련부서 협의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엘리베이터홀 내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지하층 출입구는 코아의 구조적, 공간적 문제로 슬라이딩 자동문 설치가 불가하며, 동별로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홀과 복도의 크기 및 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음</li> <li>아파트 옥상, 동출입구, 부대시설, 조경구간(단지경계 난간 포함) 등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높이, 재질,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콘크리트 난간으로 변경될 수 있음</li> <li>아파트 로비, 필로티, 공용홀 등의 평면과 입면계획(재료, 디자인 등) 등은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옥상난간 턱 높이 조정, 난간 형태, 색상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조계획 및 공용부 창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li> <li>주동 1층 로비 방공실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 될 수 있음</li> <li>주동 필로티층 상부에는 주동 출입동선 및 기타 보행자인전에 필요한 부위에는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외부 입면형태(옥상 조형물, 동 출입구, 색채 등)는 구조 내력 확보 및 미관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음</li> <li>각 동의 주차입구는 주동 필로티 등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하며, 견본주택 내 설치되는 단지 모형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li> <li>가스배관 설치규정 및 설치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노출되어 설치됨</li> <li>TV 공청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방재실과 가깝고 전파수신이 양호한 아파트 지붕(옥상)에 설치됨</li> <li>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됨</li> <li>지하 주차장 천장의 일부 구간은 열관류율 기준에 의거, 단열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음</li> <li>주상복합 건물로 주차장을 통합 사용하며, 지하 1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전용주차로 사용되고, 지하 2층 ~ 지하 3층은 주거 전용주차로 사용될 예정임</li> <li>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구조안전공간,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야간경관 조명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상승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li> <li>아파트 각 동 옥상에는 사업시행인가 기준에 따라 각 동별 설계부하에 맞게 태양광 모듈이 설치되며, 지하에는 인허가 내용에 따라 연료전지가 설치될 예정임</li> <li>102동 옥탑 상부에 정화조용 환기시설이 설치됨      • 101동 및 104동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102동 및 103동 1층에는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근린생활시설동 옥상 및 발코니에 실외기의 설치와 옥상에 화장실용 환기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li> <li>102동, 103동, 104동 1층에 지하층 급기 및 배기를 위한 DA 설치로 인해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해당 견본주택에서 해당위치를 확인하기 바람, 실시공시 위치, 형태, 크기 등은 변경될 수 있음</li> </ul>
단지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견본주택 모형 및 각종 홍보물(분양 카달로그, 전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 등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의 내외부 디자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내부 평면 및 구조, 내외부 입면 및 마감재의 색상, 재질 및 패턴, 가구 등은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변경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음</li> <li>경비실 및 차단기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 시 적정위치에 설치될 예정임</li> <li>경로당은 주방가구를 제외한 내부시설, 비품,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li> <li>102동 1층에는 경비실, 방재실, 재활용품분리수거함, 관리사무소, 맘스라운지, 103동 1층에는 경로당, 문고, 104동 지하 1층에는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며, 내부 시설물의 제공 및 인테리어는 분양홍보물에서 표현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li> <li>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가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li> </ul>
단위세대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 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설치됨</li> <li>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음</li> <li>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경우, 사용 용도가 제한되거나 불편할 수 있음</li> <li>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li> <li>단위세대의 평면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 과정에서 법정초과 발코니면적이 발생되어 50주택형 3.9000㎡, 59주택형 1.5200㎡, 64주택형 2.7300㎡, 84주택형 0.1800㎡, 116주택형 1.3000㎡, 150주택형 0.8100㎡의 면적이 전용 면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필히 관련도서 등의 열람 등을 통하여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사하였으나,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고 마감재 수준 및 내용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사시의 형태, 색상 및 사양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사 동등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 내부 및 세대간 벽체 종류는 공급면적 내에서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li> <li>•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사유로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함</li> <li>• 콘크리트 벽체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콘크리트 벽체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음</li> <li>• 콘크리트 벽체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li> <li>•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음</li> <li>•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건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질 수 있음</li> <li>• 주택형별로 기본제공 품목 및 플러스옵션 제공 여부가 상이하며, 특히, 50주택형의 경우에는 공간특성으로 인해 플러스 옵션인 중문 선택이 불가함</li> <li>• 50주택형의 공용욕실에 소형 욕조를 설치되어 있으나, 욕조를 원하지 않는 세대에 한해서 샤워부스로 무상 선택할 수 있음</li> <li>• 주동 저층부 석재 등 마감적용 시, 별도 마감적용 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가 마감을 위한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 마감이 노출될 수 있음</li> <li>•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속동과 인접한 세대는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li> <li>•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사위,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li> <li>•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 및 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 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31 주택형은 김치냉장고 및 전기오븐 설치가 불가하며, 별도 세탁실이 없고 발코니 공간이 협소하여 전동빨래건조대 폭에 제약이 있으며, 발코니 확장선택 시 쿡탑 하부장에 빌트인세탁기(9kg)이 기본제공 됨)</li> <li>• 세대 욕실 및 물사용 발코니 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가 미 시공됨</li> <li>•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li> <li>• 욕실 및 발코니의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음</li> <li>• 단위세대 현관에 플러스옵션으로 적용되는 현관 중문은 세대 내 인터리어를 위해 설치되는 품목으로 단열을 목적으로 하는 창호설치가 아니며, 중문설치로 인해 디딤판 크기가 확장되어 현관 깊이가 축소되며, 바닥 및 천장에 프레임 및 레일이 설치됨</li> <li>• 각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에 창호가 없어 채광 및 환기가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에 건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li> <li>•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 상담 및 도면을 확인하여야 함</li> <li>• 건본주택에 건립되지 않는 31주택형은 50주택형과 적용되는 마감재 내용 및 공간별 디자인 등이 상이하며, 64/84/116/150주택형도 59주택형과 적용되는 마감재 내용 및 디자인 등이 상이하므로 계약전 세대 모형 및 도면을 통해 숙지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거실, 안방 등에 설치될 수 있는 에어컨용 콘센트는 에어컨 실외기 조작 전원용이며, 실외기용 대용량 전원은 반드시 실외기에서 공급받아야 함</li> <li>• 에어컨 냉매배관은 안방과 거실에만 일괄 설치(플러스옵션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미반영됨)되며, 나머지 공간의 에어컨 설치시 입주자의 별도 공사가 필요함</li> <li>•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음</li> <li>• 욕실 및 발코니 바닥마감 레벨은 설계 치수로 실시공사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드레인은 시공시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우수 및 우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은 건본주택 내용에 따르되 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분전반, 통신 단자함, 콘센트, 통신수구 및 스위치의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최상층 세대 테라스는 계약면적(대지지분, 공용면적 등)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임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에 등기등 별도의 재산권 행사는 불가능함(단, 공용부분으로 관리주체가 공용의 목적으로 개량을 요구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함)</li> </ul>
	발코니 / 실외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 포함)에는 드레인 및 선출통이 설치될 수 있고 사양,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거나 급수가 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음</li> <li>•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li> <li>•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실외기실 및 기타 발코니의 외부창호 및 난간턱 높이와 수벽의 높이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실외기실 내부의 선출통 및 배수구는 위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 그릴 창호 형태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발코니에 설치되는 덕트, 에어컨배관, 스프링클러 배관 등이 노출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음(엘리베이터홀 포함)</li> <li>• 50/59/84주택형은 실외기실이 별도로 없어 실외기가 외벽에 노출(선반 설치)로 설치되며, 116/150주택형은 실외기가 발코니 공간에 설치됨</li> <li>•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3호 나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1.5M를 초과하는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음</li> <li>• 116 및 150주택형에 테라스가 설치되는 공간(하부층 지붕)은 개인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테라스로 나가는 창호에 난간이 설치됨</li> </ul>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 내 창호는 자연환기 창호가 설치(일부 기본 창호)되며, 각 실별 창틀 형태 및 크기, 생산업체, 개폐방식 및 방향, 틀 및 유리 색상, 설치 위치, 난간 높이 등은 실시공사 시 변경될 수 있고, 실외기실 그릴 창호, 발코니 출입문, 세대에 설치되는 난간 등도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색상 및 재질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방에서 발코니로 통하는 분합문은 건축허가도면과 달리 미관향상을 위해 건본주택과 같이 PVC 분합문으로 설치됨</li> <li>• 59주택형과 같이 단열성능과 무관하게 주방에서 발코니로 나가는 분합문에는 THK 6mm 유리가 설치됨(64/84/116/150주택형 동일)</li> <li>• 세탁실은 주택형별 단열기준에 따라 외부창호가 단창(50주택형) 또는 이중창호가 설치됨</li> <li>• 근린생활시설동, 공용부 및 부대복리시설의 창호의 크기, 두께, 사양, 개폐방향, 개폐범위, 창호 프레임 등은 실시공사 시 현장여건 및 시공사 특화설계에 따라 색상, 재질, 형태, 개폐방향 및 크기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엘리베이터홀(101동만 해당) 및 계단실의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 또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시공되며, 자동폐쇄장치는 엘리베이터홀 각 층과 계단실은 5개층마다 1개소씩 설치될 예정으로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치되오니, 이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층부 외부 석재마감 구간의 단위세대 및 코아부에 설치 창호는 마감시공을 위해 일부 창호의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li>• 실외기실 도어재질은 결로 등에 대한 성능향상을 위해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li> <li>•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철재문 및 방화문류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열림방향, 디테일은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li> <li>• 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환경 및 아파트 내 외부 마감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변경 및 경미한 설계변경을 통해 건본주택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li> <li>• 주방에 면하는 다용도실 도어는 결로 및 단열 등의 하자를 고려하여 동등 이상의 자재로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li> <li>• 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침실별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음</li> <li>• 아파트 내외부 창호의 유리사양 중 일면 Low-E 유리의 설치 위치는 결로 및 단열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음</li> <li>• 발코니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됨</li> <li>• 필로티 내부에는 지하환기용 그릴창이 설치됨</li> </ul>
전기 /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 내 통합 분전반, 통신 단자함, 콘센트, 통신수구 및 스위치 등의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방 및 욕실 직배기 설치로 인해 세대별 외벽에 주방, 욕실배기용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일부 입면이 변경될 수 있고 옥상의 무동력 팬은 설치되지 않음.</li> <li>• 주방 발코니의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 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샤워부스 및 세탁실 바닥에는 난방이 적용되지 않음</li> <li>• 주방 내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되며, 가스 쿡탑의 위치에 따라 주택형별 설치위치가 상이함</li> <li>• 세대 내 가스배관 설치로 인해 일부수납 공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해당 위치는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li> <li>• 스프링클러 배관관경 및 기준개수 등 소화시설물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li> <li>• 설비배관과 관련하여 PD 점검구가 세대 내에 설치될 수 있고, 세대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실시공 시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실내 점검구(피트층 포함)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환 등 노출됨</li> <li>• 주차관리시스템은 비주거 주차차량(지하 1층) 주거 주차차량(지하 2층 ~ 지하 3층)으로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하 2층 주차 램프 구간 1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실시공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 내 동작감지기는 1층, 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또는 거실, 기타층은 거실에만 설치됨</li> <li>• 주방기구 개수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후드장 상부는 수납이 제한적임</li> <li>• 주방 발코니의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에 따라서 선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상부장의 수납형태 및 덕트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li> <li>•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급배기구)가 각 동 지상층에 설치되므로 사전에 도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위치 및 개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ul>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의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li> <li>•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해 에어매트 설치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해당 자리에는 교목 및 관목식재가 불가함</li> <li>•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는 경우,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li> <li>• 아쿠아광장의 수경시설은 2018년 10월 16일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신고 및 관리될 수 있음</li> <li>• 공동주택 단지 경계에는 일반 철재간간이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곳에는 상업적인 목적에 따라 난간설치가 제외되고, 실시공 시 디자인 및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음</li> </ul>

## ■ 분양형토지신탁 관련 유의사항

1. 본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대행자인 대한토지신탁(주)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정비사업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두산중공업(주), 한강건설(주)는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며, 대한토지신탁(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신탁계약상 업무 범위 내에서 사업대행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함.
2.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오시공, 미시공, 사용승인 전에 발생한 하자 포함)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 두산중공업(주), 한강건설(주)가 연대하여 책임지며, 매수인은 대한토지신탁(주)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없음.
3.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음
4. 본건 공급대상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상 사업시행인가권자의 인가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사업시행자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수탁자 겸 사업대행자 대한토지신탁(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사업시행자인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됨.
6. 개별 분양세대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사업시행자인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됨.

■ 사업관계자

구 분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비 고
사업시행자(위탁자)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54271-000621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5길44, 506호(등촌동, 청림오피스텔)	
시 공 사	두산중공업㈜	194211-000094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 (귀곡동)	
시 공 사	한강건설㈜	134111-0200050	경기도 과천시 새솔막길 36, 602 (중앙동)	
사업대행자(수탁자)	대한토지신탁㈜	110111-1492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www.deungchon-weve.com/>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534-5번지

■ 분양문의 : ☎ 1811-0078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